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의안 번호	890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16일

발 의 자 : 신언근, 김제리, 이윤희, 주찬식,
김용석(서초), 강구덕, 남창진,
진두생, 우미경, 이숙자, 이해경,
우창윤, 김진철, 한명희, 권미경,
박양숙, 김창원, 김태수, 최판술,
박호근, 유동균, 유 용, 오봉수,
유광상, 맹진영, 최조웅, 최호정,
신건택, 문영민, 오승록, 박준희,
우형찬, 김생환, 김창수, 김선갑,
김광수(도봉), 양준욱, 김미경,
박기열, 박운기, 서영진, 이승로,
문종철, 김동율, 강성언, 장인홍,
김기대, 김희걸, 김영한, 김상훈,
장우윤, 이신혜, 김인제, 이현찬,
김경자, 장홍순, 김현아, 김혜련,
김기만, 김동욱, 조규영, 전철수,
김용석(도봉), 성백진, 박마루,
남재경, 이석주, 이성희, 이복근,
이순자, 김춘수, 이창섭, 강감창,
김정태, 문상모, 문형주, 김구현,
이상묵, 오경환, 김종욱, 신원철,
김광수(노원), 김진수, 최영수,
박래학, 김동승, 유찬중, 최웅식,
이정훈, 이종필, 성중기, 황준환,
박성숙, 김인호, 서윤기, 김현기,
이명희, 유 청, 조상호, 박진형,
박중화, 송재형, 김진영, 이행자,
김문수 의원(105명)

1. 주 문

가.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2018년부터는 현행 법률상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음

나. 최근 로스쿨 제도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불투명한 입학전형 등 개선요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법고시와 상생관계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음

다. 모든 국민은 빈부, 학력, 배경,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 할 것을 결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변호사시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현행 법령에서는 사법시험을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 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짧은 교육연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 등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맞물려 현재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이 변호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등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있으나, 이를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 양성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 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할 것을 결의한다.

2015.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